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의안 번호	2999
----------	------

임만균 의원 (더불어민주당, 관악구3)

- ☐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 등의 보훈 관계법령 관련 유공자들을 우대하고, 경로자 우대 및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 측면에서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(체육시설) 이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☐ 주요내용 :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관계 법령 대상자, 영유아 및 노인,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의 운동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0조제3항 신설)
- ☐ 관계 법령 :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», 「국가유공자법», 「독립유공자법», 「참전유공자법», 「의사상자법», 「노인복지법», 「장애인복지법», 「국민기초생활법」 등
- 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